

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6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10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정 이유

수도법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수돗물의 수질 검사과정 확인, 수질검사 결과 공표제 운영, 수질 향상 방안등에 대한 수질관리의 자문을 얻기 위해 “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”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수질개선에 도모하고자 함

☐ 주요 골자

가. 위원회는 수질개선을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

1. 취수 및 생산·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
2.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실시 및 공표
3. 상수도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
4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기술의 자문
5.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나. 위원은 시의원, 수질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

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수도법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취수 및 생산·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
2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3.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
4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
5.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.

③위원은 시민·시의회 의원·수질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.

제4조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사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등) ①위원회의 안전작성,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상하수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

제9조(수당등)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통보)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상하수도과 ☎ 940-4801
입안자	상하수도과장	강 경 배
	수도행정담당	박 찬 규
	담당자	윤 태 돈